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 513 호

2003 년 5 월 2 일 금요일

차 례

공 고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3-223호(인천광역시남동구자원봉사활동자원조례(안)입법예고공고)----- 3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3-224호(소유사실확인원발급에따른관계공부열람및이의신청공고(논현2택지))----- 9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3-225호(공시송달공고)----- 11

회 람								
--------	--	--	--	--	--	--	--	--

발행 : 인천광역시 남동구 편집 : 문화홍보실

공	고
---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3-223호

인천광역시남동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입법예고공고

인천광역시남동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구민에게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남동구법제사무처리규칙제1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 5. 2.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조례명 : 인천광역시남동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2. 제정취지

최근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대되고 활동영역도 다양화 되어 가고 있는 자원봉사활동의 체계적인 지원·육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 하여 더불어 사는 공동체 건설에 기여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제정의 목적 및 자원봉사자의 개념, 자원봉사 활동의 범위 규정(조례안 제1조, 제2조, 제3조)
- 지역단위 자원봉사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자원봉사 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조례안 제4조, 제5조, 제6조)
-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과 그에 따른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예·결산서의 제출과 관련서류 보관,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조례안 제7조, 제8조, 제9조)
- 자원봉사자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 활동의 경력인정 권장과 포상·보험가입·실비지원 등을 규정 (조례안 제11조, 제12조, 제13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3년 5월 22일까지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참조:총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032-453-2163)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5. 공청회 개최계획 : “공청회 개최계획 없음”

인천광역시남동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남동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들이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한 자원봉사활동을 체계화하고 지원·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타인 및 지역사회 등을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원봉사자”라 함은 제1호에 규정된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자원봉사단체”라 함은 제1호에 규정된 자원봉사활동을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각각의 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4. “자원봉사수요자”라 함은 제1호에 규정된 자원봉사활동을 필요로 하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을 말한다)과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자원봉사활동의 분야 및 종류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사회개발에 관한 봉사활동
2. 사회복지 및 주민보건증진에 관한 봉사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봉사활동
4. 교육 및 청소년선도에 관한 봉사활동
5. 범죄예방에 관한 봉사활동
6.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봉사활동
7. 재해·재난관리 및 구조에 관한 봉사활동
8. 문화·예술·체육진흥에 관한 봉사활동
9. 소비자보호에 관한 봉사활동

10.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11. 기타 공익사업수행 또는 구민 복리증진에 필요한 봉사활동

제4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자원봉사센터) 구청장은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장려하는데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남동구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1. 자원봉사자의 모집·배치 및 교육에 관한 사항
2. 자원봉사에 관한 자료의 수집 및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3.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4. 자원봉사단체, 학교, 기업 또는 직장 등에서 시행하는 자원봉사활동과의 연계 활동에 관한 사항
5. 자원봉사수요자의 자원봉사활동 요청 시 그 지원에 관한 사항
6. 기타 자원봉사활동 진흥에 관한 사항

제6조(센터의 운영 등)

- ①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원봉사단체 또는 자원봉사자는 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② 자원봉사 수요자는 센터에 자원봉사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센터의 운영 전반에 걸친 자문과 사업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원봉사센터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④ 센터의 운영은 자원봉사 활동의 전문성 또는 자율성 등을 위하여 자원봉사 활동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⑤ 구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센터의 운영을 위탁시키는 경우에는 구의 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운영등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 ⑥ 기타 센터의 조직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등록취소) 구청장은 제6조제1항에 의거 등록된 봉사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등록한 후 1년간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전혀 없는 자원봉사자 및 단체
2. 자원봉사활동으로 알게된 공무상의 비밀 또는 자원봉사수요자의 비밀을 누설 하는 경우
3.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 등을 받은 경우

제8조(예산 및 결산 등)

- ① 센터는 자원봉사활동 및 운영을 위한 지원을 받기 위하여서는 매 회계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당해 연도 개시 2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② 센터는 매 회계 연도의 수입·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 연도 2월 말 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감독)

- 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원봉사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 구청장은 수탁자의 운영상황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 ② 수탁자는 조사 또는 점검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자원봉사주간) ① 구청장은 구민들의 자원봉사활동에의 참여를 증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자원봉사주년을 설정·운영할 수 있다.

- ② 자원봉사주간 및 그 행사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포상 등)

- ① 구청장은 자원봉사활동에 관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자원봉사자가 특정한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경력에 대하여서는 취업, 임용, 진학 등의 성적에 반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12조(보험가입)

① 구청장은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하는 재해·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센터로부터 자원봉사활동을 지원 받은 자원봉사수요자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험 등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그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설비지급) 센터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물품 및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설치된 자원봉사센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3-224호

소유사실확인원발급에따른관계공부열람및이의신청공고

대한주택공사 논현사업단에서 시행하는 인천논현2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논현동 및 고잔동 일대 공공용지에 편입되는 지장물에 대하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사실확인원의 발급에 앞서 관계공부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편입대상 물건의 지번 : 별첨
2. 편입되는 물건 및 정당권리자의 현황 : 별첨
3. 관계공부 열람장소 : 남동구청 세무과
4.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 2003. 5. 2 ~ 2003. 5.31(30일간)
5. 이의신청 방법 : 공고내용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2003. 5. 31일까지) 불복사유를 문서(관계서류)로 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음
- 주) 위 기간내에 이의신청이 접수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고된 바대로 소유사실확인원을 발급합니다.
6. 이의신청 접수장소 : 남동구청 세무과 재산세팀(☎453-2284)

2003. 5. 2.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보 상 액 산 정 조 서 (지 장 물 조 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물건종류	구 조	규격(m ²)	소 유 자		비고
						성명	주 소	
1	논현동	산28-5	가옥 창고 창고 화장실 보일러실 가추 건사 버섯재배장 창고	브릭스레트 브릭스레트 목조 이동식 브릭스라브 스레트 목조 철골 목조	153.18 13.03 15.60 2.25 6.72 78.15 2.00식 330.48 6.30	최동국	남동구 논현동 산28-5	
2	논현동	126	가옥 부엌 가추 창고 보일러실 화장실	브릭스레트 브릭스레트 목조스레트 브릭스레트 목조 브릭스레트	35.40 11.55 19.59 9.40 2.40 2.25	이길성	남동구 논현동 126	
8	논현동	248-16	가옥겸점포 창고 화장실	브릭스레트 브릭스라브 브릭스레트	100.32 4.20 3.60	채건식	남동구 논현동 248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3-225호

민방위과태료공시송달공고

대 상 : 이동민의 8건

서류의 명칭 : 2002하반기 민방위교육의무위반 과태료 납세고지서

서류의 내용 : 별첨

공시송달공고기간 : 2003. 5. 3 ~ 5. 23

2002년하반기 민방위교육의무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주소 및 거소불명, 수취인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지방세법 제52조제2항에 의거 공고하고, 납기를 2003년 5월 23일까지 변경하오니 본 구청 자치행정과에서 고지서를 수령하시어 시중은행, 농협, 수협, 축협 및 새마을금고 또는 전국우체국과 농협중앙회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 5. 2.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민방위과태료

2002하반기 민방위교육의무 위반 과태료 납세고지서 공시송달내역

【자치행정과 민방위팀】

연번	납부자	납세의무자주소	세액	사유
1	이동민	인천 남동 만수3 852-20 경수빌라 A-301	100,000	송달불능
2	김현선	인천 남동 만수3 855-2 정은베스트빌라 402	100,000	송달불능
3	윤지섭	인천 남동 만수3 111-220 공명씨티빌라 A-401	100,000	송달불능
4	윤창식	인천 남동 만수6 1076-6	100,000	송달불능
5	윤지광	인천 남동 만수6 1044 뉴서울A 103-815	100,000	송달불능
6	유희량	인천 남동 남촌도림 349-13	100,000	송달불능
7	나형주	인천 남동 남촌도림 356-10 대하빌라 A-101	100,000	송달불능
8	전용환	인천 남동 남촌도림 571-1 청호A 103-402	100,000	송달불능
9	이인택	인천 남동 남촌도림 559-12 한일맨션 103-101	100,000	송달불능